

# 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6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위탁  
관리운영시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용료의 요율 신설(안 제24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협의 : 해당없음

마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라. 입법예고 : 2010. 4. 22 ~ 5. 12(20일간), 제출된 의견없음

## 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 1”로 하고,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위탁사용료의 요율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읍·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(제2조 관련)

번호	회 관 명	주 소
1	봉평면 종합복지회관	평창군 봉평면 기풍4길 10(창동리 344)
2	용평면 종합복지회관	평창군 용평면 경광로 1689(장평리 374-2)
3	방림면 종합복지회관	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101(계촌리 1410-1)
4	미탄면 종합복지회관	평창군 미탄면 청옥산1길 13(창리 607-1),
5	대관령면 종합복지회관	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91-8(횡계리 324-1)
6	대화면 종합복지회관	평창군 대화면 남산1길 15(대화리 984)
7	방림면 복지회관	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328-3(방림리 1271-2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4조(위탁관리)</b> ①읍·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재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·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b>제24조(위탁관리)</b> 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         <p><b>제24조의2(위탁사용료 요율)</b>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</p>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**제14조(사용료)**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, 전세금의 산정,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5년 이내"를 "3년 이내"로 한다.

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.

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